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781544
등록번호	110111-7815446

상 호	주식회사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021.04.08 변경 2021.04.09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2021.04.08 변경 2021.04.09 등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krei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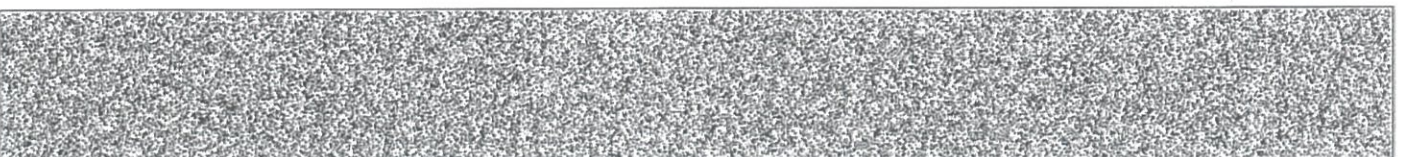
1주의 금액	금 5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 주 보통주식 600,000 주	금 3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700,000 주 보통주식 700,000 주	금 350,000,000 원	2021.07.03 변경 2021.07.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8,510,266 주 보통주식 108,510,266 주	금 54,255,133,000 원	2021.07.06 변경 2021.07.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55,020,532 주 보통주식 155,020,532 주	금 77,510,266,000 원	2021.09.04 변경 2021.09.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96,554,079 주 보통주식 196,554,079 주	금 98,277,039,500 원	2022.08.13 변경 2022.08.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70,132,679 주 보통주식 270,132,679 주	금 135,066,339,500 원	2023.10.06 변경 2023.10.06 등기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포함함) 및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	---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5000605810105022610042200424150178772121J1H0M111 1 발급확인번호 5445-AAXU-MCMN 발행일: 2024/06/25

등기번호	781544
------	--------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준혁 690104-*****~~

2021 년 04 월 08 일 사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대표이사 이준혁 690104-*****~~

→

2021 년 04 월 08 일 사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차타비상무이사 김혜라 730731-*****~~

2021 년 04 월 08 일 사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차타비상무이사 김아태 790820-*****~~

2021 년 04 월 08 일 사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감사 김정현 761005-*****~~

2021 년 04 월 08 일 사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법인이사 에스케이리츠운용주식회사 110111 *****

2021 년 04 월 08 일 취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감독이사 권혁진 661012-*****~~

2021 년 04 월 08 일 취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2021 년 05 월 06 일 사임

2021 년 05 월 26 일 등기

~~감독이사 김재정 631102-*****~~

2021 년 04 월 08 일 취임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2024 년 06 월 20 일 중임

2024 년 06 월 21 일 등기

~~감독이사 김동수 620404-*****~~

2021 년 05 월 25 일 취임

2021 년 05 월 26 일 등기

2023 년 03 월 22 일 사임

2023 년 03 월 28 일 등기

~~감독이사 최재영 730117-*****~~

2023 년 03 월 22 일 취임

2023 년 03 월 28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111271-000705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21 년 04 월 08 일 설치

2021 년 04 월 09 일 등기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등기번호	781544
------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전 환 사 채

제1회 전환사채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어백구십억원(29,000,000,000원)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그 수량은 금 오억원 5쿼터, 금 일십억원 4쿼터, 금 일십오억원 1쿼터, 금 이십억원 1쿼터, 금 이십오억원 4쿼터, 금 삼십억원 3쿼터, 총 18쿼터로 한다.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퍼센트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용: 전환청구한 본 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 이상의 거래단위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등록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환가액: 금 5,135원 (1주당 액면금액 500원 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0월 06일) 전일을 가산일로 하여 그 가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 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이며, 전환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frac{[A+(B \times C/D)]}{(A+B)}$

등기번호

781544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병합 및 소각),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니모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기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07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5년 09월 07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등기번호	781544
------	--------

< 2022 년 10 월 07 일 발행 2022 년 10 월 11 일 등기 >
< 2022 년 12 월 08 일 전부상환 2022 년 12 월 08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2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일천구십억원(109,0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그 수량은 금 5억원 1쿼터, 금 8억원 1쿼터, 금 10억원 14쿼터, 금 15억원 1쿼터, 금 20억원 1쿼터, 금 22억원 1쿼터, 금 25억원 4쿼터, 금 30억원 11쿼터, 금 50억원 3쿼터, 금 100억원 3쿼터 총 40쿼터로 한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 이상의 거래단위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등록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최초 전환가액: 금 4,779원(1주당 액면금액 500원 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2월 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이며, 전환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frac{\{A+(B \times C/D)\}}{(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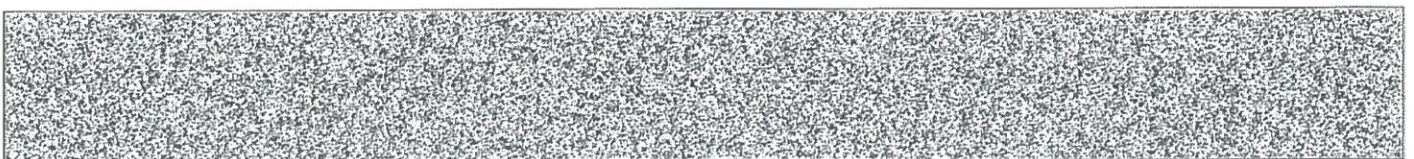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등기번호	781544
------	--------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병합 및 소각),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인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3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5년 11월 12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22년 12월 13일 발행 2022년 12월 13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3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이백삼십일억원(23,10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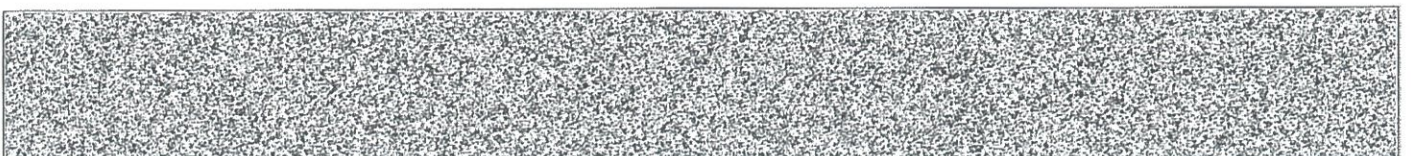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본 사채의 거래단위 및 그 수량은 금 50억원 1쿼터, 금 30억원 3쿼터, 금 20억원 4쿼터, 금 11억원 1쿼터, 총 9쿼터로 한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등기번호

781544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청구하는 경우 전환청구한 금액의 100%를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급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최초 전환가액: 금 5,103원(1주당 액면금액 500원 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03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이며, 전환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left[\frac{A + (B \times C/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소, 주식의 병합 및 소각),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등기번호	781544
------	--------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3월 15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2월 15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23 년 03 월 15 일 발행 2023 년 03 월 16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21 년 03 월 15 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1 년 03 월 15 일 등기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4년 06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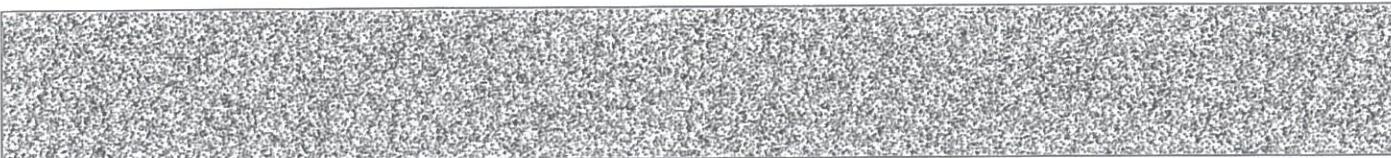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5000605810105022610042200424150178772121J1H0M1I1 1 발급확인번호 5445-AAXU-MCMN 발행일: 2024/06/25